

- 미혼근로자 결혼 유도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위한 - 『충북 행복결혼공제』 참여 기업(근로자) 모집

영동군에서는 중소기업 미혼근로자의 안정적인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근로 유도를 위한 충북 행복결혼 공제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기업 및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18년 2월 20일

영동군수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청년층의 결혼 포기 및 만혼현상이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제기됨에 따라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, 대기업·공기업에 비해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근로 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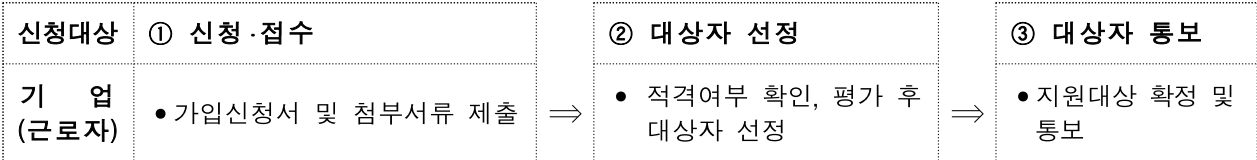
□ 사업개요

- (사업기간) 2018. 3월 ~ 2023. 2월 (5년간)
※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
- (지원인원) 12명 (신청자 초과 시 ‘기업 평가표’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)
- (지원대상)
 - (기업) 충청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 중소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
 - (근로자)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영동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제조업종 중소기업 미혼근로자로 사업주의 동의 또는 추천을 받은 자
- (지원내용) 중소기업 미혼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충청도, 영동군,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기간내 본인 결혼시 만기후 목돈(원금+이자) 지급

- ✓ 월 적립금액 : 80만원 ⇨ 지자체 30(충북도 15, 영동군 15), 기업체 30, 근로자 20
- ✓ 5년 만기시 적립금액 : 4,800만원 + 이자
 - 4,800만원 ⇨ 지자체 1,800(충북도 900, 영동군 900), 기업체 1,800, 근로자 1,200
 - 5년 만기 적립 및 결혼+기업체 근속 조건 충족시 지급

※ 기업·근로자 간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금 납입 시, 지자체 적립금 전액 회수

□ 사업 신청절차



2. 신청인원

□ 기업별 신청인원

- 기업당 1명 신청
- 참여제한
 - 사업주(기업 대표) 및 직계비속, 형제·자매 관계에 있는 자
 -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
 - 제조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 C10~34) 외 기타업종
 - 대기업 및 총 종사자수 5인 미만 업체
 - 휴·폐업중인 기업
 - 5년 미만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
 - 폐이퍼컴퍼니 등 안정성이 없는 기업

3. 신청방법 및 문의처

□ 신청방법

- (접수기간) 2018. 2. 20. ~ 2018. 3. 12. 18:00까지
- (접수방법) 영동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방문 접수
 - ※ 근로자 주소지 시·군에 신청
- (신청서식 및 세부사항) 영동군 홈페이지 사업안내(공고) 참조
- (신청서류)

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1. 가입신청서 1부 | 6. 원천징수납입증명서(근로자) 1부 |
| 2. 주민등록등본(근로자) 1부 | 7. 재직증명서(근로자) 1부 |
| 3. 혼인관계증명서(근로자) 1부 | 8. 연결계좌 통장사본(근로자) 1부 |
| 4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| 9. 기업 기본현황 및 첨부서류 1부 |
| 5. 중소(중견)기업 확인서 1부 | 10. 개인정보동의서(근로자) 1부 |

문의처

- 영동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Tel 043-740-3042